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7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정춘생·김준형·서왕진

조 국 • 이해민 • 황운하

박은정 · 김재원 · 김선민

차규근 • 신장식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운영과 장기적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등장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과 배분 비율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또는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 기준

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의사 에 상응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 석"을 "5석"으로, "5씩을"을 "10씩을"로, "2씩을"을 "5씩을"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	제27조(보조금의 배분) <u><삭</u>
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	<u>제></u>
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	
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	
<u>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u>	
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	
지급한다.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② <u>5석</u>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u>10</u> 씩을
<u>아닌 정당으로서 5석</u>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u>5씩을</u> ,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5씩을</u>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	
조금의 100분의 <u>2씩을</u> 배분·	
지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의</u> 규정에	③ <u>제2항의</u>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	
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	
라 배분ㆍ지급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